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1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박해철 · 이수진
임미애 · 김남근 · 김문수
이연희 · 양부남 · 박정현
송재봉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·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,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 분야 관계 부처의 정책을 총괄·조정하던 정부조직 체계를 반영한 것이나,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정책협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.

특히 인신매매등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은 성평등가족 부뿐만 아니라 교육부, 법무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경찰청, 해양경찰청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범정부적 정책으로서 관계

부처 간 종합적인 조정과 협력이 요구됨.

이에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, 교육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인신매매등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·협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9조).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부장관”을 “국무총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5인”을 “16인”으로, “교육부장관이”를 “국무총리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제9호에”를 “제2항제10호에”로 한다.

1. 교육부장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책협의회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책협의회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9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위원

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·조정을 하기 위하여 <u>교육부장관</u>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(이하 “정책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9조(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국무총리</u>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5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<u>교육부장관</u> 인 되고,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<u>16인</u> ----- ----- <u>국무총리</u> <u>가</u>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<u>1. 교육부장관</u>
<u>1. ~ 9.</u> (생 략)	<u>2. ~ 10.</u> (현행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
③ <u>제2항제9호에</u>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	③ <u>제2항제10호에</u> ----- ----- -----.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